

선 람	기 관 의 장

시 G 보

제16호(호외) 2022. 4. 29.(금)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908호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
광양시 조례 제1909호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6
광양시 조례 제1910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광양시 조례 제1911호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광양시 조례 제1912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광양시 조례 제1913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광양시 조례 제1914호 광양시 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광양시 조례 제1915호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8
광양시 조례 제1916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광양시 조례 제1917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광양시 조례 제1918호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63
광양시 조례 제1919호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65
광양시 조례 제1920호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규 칙

광양시 규칙 제894호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72
광양시 규칙 제895호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	74
광양시 규칙 제896호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폐지규칙	76
광양시 규칙 제897호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위탁시행규칙 폐지규칙	78

광양시 규칙 제898호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	80
광양시 규칙 제899호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자매각규칙 폐지규칙	82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22호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업무용지공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	84
광양시 규정 제423호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이주민택지공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	8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장직 인수위
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08호

붙 임 :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

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규칙의 제정
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09호

붙임 :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의견제출인에게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0호

붙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을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휴가) ① ~ ④(생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 」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제7조제1항의-----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15일</u>	2. ----- --: <u>20일</u>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15일</u>	3. ----- : <u>30일</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u><신설></u>	⑧ ~ ⑩ (현행과 같음) <u>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	--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1호

붙임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3조----- ----- ----- ----- ----- ----- -----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구수 1만명 미만 읍·면·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읍·면·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명 이상 읍·면·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17조(구성 등) ① ----- ----- ----- ----- ----- ----- -----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	⑥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⑦ ----- 부위원장은 -----
-----.

--.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2호

붙임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 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150원</u>	1. ----- ----- ----- : ----- <u>500원</u>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 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300원</u>	2. ----- ----- -----: ----- <u>1,000원</u>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3호

붙임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이차보전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이차보전”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
2. 소상공인 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홍보 지원
5.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지도
6.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생략)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조(<u>이차보전 지원</u>)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후단 신설>	제9조(<u>이자차액 보전 지원</u>) ① - ----- ----- ----- . <단서 삭제> ----- ----- . <u>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u>
② <u>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u> 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② <u>이차보전</u> ----- ----- ----- ----- -----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생략)

<신설>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2(소상공인 원스톱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u>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u> <u>2. 소상공인 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시</u> <u>3. 지역 상권 조사, 분석</u> <u>4. 소상공인 홍보 지원</u> <u>5.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지도</u> <u>6.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업무</u>
--	---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4호

붙임 :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료전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사업 및 운영
7.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련 사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5호

붙 임 :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노년기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광양시 소재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

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및 상담 지원
2. 구직과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일자리 연계사업
3. 중장년 체육활동 지원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 문화·여가 지원
6.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언론사,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년기의 성공적인 준비에 필요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폐지) 종전의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폐지한다.

제3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중장년 지원시설”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6호

붙 임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이용수칙)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수칙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광양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란 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란과 성황스포츠센터(수영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 황 스포 츠 센 터 (다 목 적 체 육 관)	광양시 도이동 267-1	부지면적 8,188㎡ 연면적 17,991㎡, 관람석 1,244석	배드민턴장,탁구장,헬스장,스쿼 시장,에어로빅실,요가실,다목적실, 세미나실,문화교실,소모임실, 어린이 북카페 등
성 황 스포 츠 센 터 (수 영 장)	광양시 도이동 산20-1	부지면적 8,012㎡ 연면적 5,906㎡ 관람석 520석	수영장,,샤워실,탈의실(남,여),감독 관실,선수대기실,강사실,의무실, 방송실,전기실,발전기실 등

별표 2의 시설별란 중 “광양실내체육관”을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으로 하고, “광양수영장”을 “광양수영장, 성황스포츠센터(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구분란 중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및 제2호 시설별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로 한다.

별표 6의 기준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터(다목적체육관)”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구분란 중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설별		기 준	개 인		단 체		비고
			일반 (성인)	감면대상	일반 (성인)	감면대상	
광 양 실 내 체 육 관 성 황 스포츠센터 (다 목 적 체 육 관)		2시간당(1인)	800	400	500	250	
광양국민 체육센터 (장애인 체 육 관)	체 육 관	2시간당(1인)	800	400	500	250	장애인 무료
	체 단 력 실	1일 이용	2,000	1,000	-	-	
		월 이용	25,000	13,000	-	-	
궁 도 장		2시간당(1인)	1,500	-	1,200	-	
테 니 스 장		2시간당	주간 1,500 야간 2,000	750	1,200	600	
		(1인)		1,000	1,500	750	
성 황 스 포 츠 센 터 (다 목 적 체 육 관)	배드민턴	2시간당(1인)	2,000	1,000	-	-	
		1개월	30,000	15,000	-	-	
	탁 구	2시간당(1인)	2,000	1,000	-	-	
		1개월	30,000	15,000	-	-	
	스 퀴 시	2시간당(1인)	5,000	3,500	-	-	
		1개월	60,000	30,000	-	-	
	헬 스	2시간당(1인)	2,000	1,000	-	-	
		1개월	35,000	17,500	-	-	
	에어로빅	1개월	35,000	17,500	-	-	
	요 가	1개월	54,000(주3회)	27,000(주3회)	-	-	
			36,000(주2회)	18,000(주2회)			
	다목적실	오전(4h)	40,000	20,000	-	-	
		오후(4h)	40,000	20,000	-	-	
	문화교실	오전(4h)	30,000	15,000	-	-	
		오후(4h)	30,000	15,000	-	-	
	세미나실	오전(4h)	50,000	25,000	-	-	
		오후(4h)	60,000	30,000	-	-	
	소모임실	오전(4h)	15,000	7,500	-	-	
		오후(4h)	15,000	7,500	-	-	

(비고) 1. 정구장 이용료는 테니스장을 준용한다.

2.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장애인 무료는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중증(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4. 그린카드 소지자 개인이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성인)만 해당된다.

〔별표 7〕

수영장 이용료 (제22조 관련)

1. 단일형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광양수영장	대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체 : 3,000)		2,000 (단체 : 1,500)	-		
	1개월	60,000	50,000	30,000	35,000	35,000	40,000
	3개월	153,000	127,500	76,500	105,000	105,000	120,000
성 황 스포츠센터 수영장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체:3,000)		2,000 (단체:1,500)	-		
	1개월	60,000	50,000	30,000	-	-	40,000
	3개월	153,000	127,500	76,500	-	-	120,000

2. 연계형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광양수영장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개월	80,000	72,000	55,000	60,000
	3개월	213,000	191,000	146,000	180,000

- (비고) 1. 수영장 이용료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단일형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다만, 수영 외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영 연계상품은 광양수영장만 해당하며 월회원 15%, 분기회원 25%를 감면한다. 다만, 다른 연계형 상품의 경우는 월 10,000원을 할인한다.
 4. 가임여성은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만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5.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영의 월 강습료 10,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6.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7. 그린카드 소지자(개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u>광양수영장 이용수칙</u>”이란 <u>광양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u> 14. (생략)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u>광양수영장 이용수칙</u>) ① <u>이용수칙에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중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u> ② <u>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u> 1. <u>시간별 프로그램(강습반) 내용</u> 2. <u>연계형 프로그램 이용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제4조의2(<u>이용수칙</u>) ① <u>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u> ② <u>이용수칙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u>
제18조(회계운영) ① (생략)	제18조(회계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 할 수 없다.

1. ~ 11. (생략)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 18. (생략)

제27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략)

④ 수영장 이용료 반환은 광양수영장 이용수칙에 따른다.

⑤·⑥ (생략)

② ----- 「광양시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

-----.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 18.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영장
-----.

⑤·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광양시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양공설운동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23,500㎡ 건축 2,230㎡ 관람석 7,980석	우레탄트랙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등
광양내체육관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218㎡ 건축 4,292㎡ 관람석 1,662석	배드민턴코트 9면, 배구코트 2면,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광양수영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7	부지면적 21,203㎡ 건축 6,094㎡ 50m 10레인 관람석 1,000석	수영장 샤워실, 사우나실, 매점, 물놀이대, 휴게실, 운동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기계, 전기, 발전실 등
광양국민체육관	광양시 봉곡면 매전로 695-9	부지면적 9,285㎡ 건축 2,275.12㎡ 관람석 216석	다목적체육관, 로보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기증 샤워실, 인문실, 체력측정실, 시간대구장, 방송실, 발전실, 전기시설, 사무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축구전용구장 1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2,50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트랙 140m/6레인
축구전용구장 2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0,85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 1 축구동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부지면적 15,897㎡ 건축 507㎡ 관람석 671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마 2 축구동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부지면적 11,561㎡ 관람석 1,46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 1 풋살구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마 2 풋살구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광영축구장	광양시 광영동 1089	부지면적 52,121㎡ 건축 261㎡ 경기장면적 9,087㎡ 관람석 52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광영풋살장	광양시 광영동 1089	경기장면적 924㎡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우산궁도장 (유림정)	광양시 우산읍 원길 74-1	부지면적 3,190㎡ 건축 387㎡	과녁 4
광영궁도장 (백운정)	광양시 광영읍 골길 85(광영동)	부지면적 9,935㎡ 건축 196.11㎡	과녁 3
중마궁도장 (마로정)	광양시 가마로동 65(마로동)	부지면적 17,880㎡ 건축 720㎡	과녁 4
광양시립테니스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부지면적 8,842㎡ 건축 171.71㎡	테니스코트 8면 조명 1식
마테니스장	광양시 동광동 1188	부지면적 4,320㎡	테니스코트 6면 조명 1식
광양시립하계경기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111	부지면적 3,674㎡ 건축 49.5㎡	코트 4면

[별표 1]

광양시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양공설운동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23,500㎡ 건축 2,230㎡ 관람석 7,980석	우레탄트랙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등
광양내체육관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218㎡ 건축 4,292㎡ 관람석 1,662석	배드민턴코트 9면, 배구코트 2면,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광양수영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7	부지면적 21,203㎡ 건축 6,094㎡ 50m 10레인 관람석 1,000석	수영장 샤워실, 사우나실, 매점, 물놀이대, 휴게실, 운동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기계, 전기, 발전실 등
광양국민체육관	광양시 봉곡면 매전로 695-9	부지면적 9,285㎡ 건축 2,275.12㎡ 관람석 216석	다목적체육관, 로보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기증 샤워실, 인문실, 체력측정실, 시간대구장, 방송실, 발전실, 전기시설, 사무실 등
성황스포츠험터 (다목적체육관)	광양시 도이동 267-1	부지면적 8,188㎡ 연면적 17,991㎡ 관람석 1,244석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 스퀘시장, 에어로빅실, 요가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문화교실, 소모임실, 복카페
성황스포츠험터 (수영장)	광양시 도이동 산20-1	부지면적 8,012㎡ 연면적 5,906㎡ 관람석 520석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남,여), 관동관실, 선수대기실, 강사실, 의무실, 방송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축구전용구장 1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2,50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트랙 140m/6레인
축구전용구장 2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경기장면적 10,85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 1 축구동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부지면적 15,897㎡ 건축 507㎡ 관람석 671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마 2 축구동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부지면적 11,561㎡ 관람석 1,46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 1 풋살구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마 2 풋살구장	광양시 봉곡면 명암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광영축구장	광양시 광영동 1089	부지면적 52,121㎡ 건축 261㎡ 경기장면적 9,087㎡ 관람석 52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광영풋살장	광양시 광영동 1089	경기장면적 924㎡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우산궁도장 (유림정)	광양시 우산읍 원길 74-1	부지면적 3,190㎡ 건축 387㎡	과녁 4
광영궁도장 (백운정)	광양시 광영읍 골길 85(광영동)	부지면적 9,935㎡ 건축 196.11㎡	과녁 3
중마궁도장 (마로정)	광양시 가마로동 65(마로동)	부지면적 17,880㎡ 건축 720㎡	과녁 4
광양시립테니스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695-20	부지면적 8,842㎡ 건축 171.71㎡	테니스코트 8면 조명 1식
마테니스장	광양시 동광동 1188	부지면적 4,320㎡	테니스코트 6면 조명 1식
광양시립하계경기장	광양시 광양읍 매전로 111	부지면적 3,674㎡ 건축 49.5㎡	코트 4면

[별표2]

전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행사외		비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트랙	오 전 (09시~ 13시)	25,000	35,000	60,000	80,000	
	오 후 (14시~ 18시)	25,000	35,000	60,000	80,000	
	주 간 1 일 (09시~18시)	50,000	70,000	120,000	160,000	
천연잔디 축구장	3시간기준 (정규1게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광양실내체육관	오 전 (09시~ 13시)	20,000	30,000	60,000	80,000	
	오 후 (14시~ 18시)	20,000	30,000	60,000	80,000	
	야 간 (18시~22시)	20,000	30,000	60,000	80,000	
	주 간 1 일 (09시~18시)	40,000	60,000	120,000	16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주 간 1 일 (일 반)	30,000	50,000	100,000	140,000	
	주 간 1 일 (장애인단체)	15,000	25,000	50,000	70,000	
광양수영장	주 간 1 일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인조잔디 축구장	3시간기준 (정규1게임)	60,000	80,000	100,000	120,000	
풋살경기장	2시간기준 (정규1게임)	-	-	20,000	30,000	1코트당
테니스장	주 간 (2 시 간)	-	-	12,000	18,000	1코트당
	야 간 (2 시 간)	-	-	16,000	24,000	
궁도장	주 간 1 일 (4 시 간)	-	-	20,000	30,000	

[별표2]

전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행사외		비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트랙	오 전 (09시~ 13시)	25,000	35,000	60,000	80,000	
	오 후 (14시~ 18시)	25,000	35,000	60,000	80,000	
	주 간 1 일 (09시~18시)	50,000	70,000	120,000	160,000	
천연잔디 축구장	3시간기준 (정규1게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광양실내체육관	오 전 (09시~ 13시)	20,000	30,000	60,000	80,000	
	오 후 (14시~ 18시)	20,000	30,000	60,000	80,000	
	야 간 (18시~22시)	20,000	30,000	60,000	80,000	
	주 간 1 일 (09시~18시)	40,000	60,000	120,000	16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주 간 1 일 (일 반)	30,000	50,000	100,000	140,000	
	주 간 1 일 (장애인단체)	15,000	25,000	50,000	70,000	
광양수영장, 성항스포츠크센터 (수영장)	주 간 1 일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인조잔디 축구장	3시간기준 (정규1게임)	60,000	80,000	100,000	120,000	
풋살경기장	2시간기준 (정규1게임)	-	-	20,000	30,000	1코트당
테니스장	주 간 (2 시 간)	-	-	12,000	18,000	1코트당
	야 간 (2 시 간)	-	-	16,000	24,000	
궁도장	주 간 1 일 (4 시 간)	-	-	20,000	30,000	

〔별표 3〕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기 준	개 인		단 체		비고
		일반 (성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어린이·유아,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일반 (성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어린이·유아, 청소년·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광 양 실내체육관	2시간당 (1인)	800	400	500	250	
광 양 국민체육 센터	2시간당 (1인)	800	400	500	250	장애인 무료
체력 센터	1일 이용	2,000	1,000	-	-	
(장애인 체육관)	월 이용	25,000	13,000	-	-	
공 도 장	2시간당 (1인)	1,500	-	1,200	-	
테 니 스 장	2시간 당	1,500	750	1,200	600	
	1인 야간	2,000	1,000	1,500	750	

(비고) 1.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2. 정구장 이용료는 테니스장을 준용한다.

3.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4.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장애인 무료는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중증(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5.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의 이용료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금액인.

6. 그린카드 소지자 개인이 실내체육관 및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성인)만 해당된다.

7. 광양수영장 이용료는 【별표7】에 의한다.

〔별표 3〕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기 준	개 인		단 체		비고
		일반(성인)	감면대상	일반(성인)	감면대상	
광 양 실내체육관	2시간당 (1인)	800	400	500	250	
성 황 스포츠 센터	2시간당 (1인)	800	400	500	250	
(다목적체육관)	1일 이용	2,000	1,000	-	-	장애인 무료
광 양 국민체육 센터	체력 이용	25,000	13,000	-	-	
공 도 장	2시간당 (1인)	1,500	-	1,200	-	
테 니 스 장	2시간 당	1,500	750	1,200	600	
	1인 야간	2,000	1,000	1,500	750	
배 드 민턴	2시간당 (1인)	2,000	1,000	-	-	
	1개월	30,000	15,000	-	-	
탁 구	2시간당 (1인)	2,000	1,000	-	-	
	1개월	30,000	15,000	-	-	
스크리	2시간당 (1인)	5,000	3,500	-	-	
	1개월	60,000	30,000	-	-	
헬 스	2시간당 (1인)	2,000	1,000	-	-	
	1개월	35,000	17,500	-	-	
에 어 로빅	1개월	35,000	17,500	-	-	
	1개월	54,000 (주3회)	27,000 (주3회)	-	-	
요 가	1개월	36,000 (주2회)	18,000 (주2회)	-	-	
	오전(4h)	40,000	20,000	-	-	
다 목 적 실	오후(4h)	40,000	20,000	-	-	
	오전(4h)	30,000	15,000	-	-	
문 화 교 실	오후(4h)	30,000	15,000	-	-	
	오전(4h)	50,000	25,000	-	-	
세 미 나 실	오후(4h)	60,000	30,000	-	-	
	오전(4h)	15,000	7,500	-	-	
소 모 임 실	오후(4h)	15,000	7,500	-	-	
	오후(4h)	15,000	7,500	-	-	

(비고) 1. 정구장 이용료는 테니스장을 준용한다.

2.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장애인 무료는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
에 한하며, 중증(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4. 그린카드 소지자 개인이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성인)만 해당된다.

[별표 4]

중계방송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중 계 방 송		녹 화 방 송		비고
	TV	라디오	TV	라디오	
공 설 운동장	12,000	8,000	5,000	3,000	주최측부담
실 내 체육관	20,000	15,000	10,000	7,500	"

[별표 4]

중계방송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중 계 방 송		녹 화 방 송		비고
	TV	라디오	TV	라디오	
공 설 운동장	12,000	8,000	5,000	3,000	주최측부담
실 내 체육관 성향스포츠클럽센터 (다목적체육관)	20,000	15,000	10,000	7,500	"

[별표 5]

상업사용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종 별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공설운동장	주간	15,000
		야간	20,000
	실내체육관	주간	20,000
		야간	25,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	공설운동장	소형(10미터미만 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10,000
		중형(2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20,000
		대(1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30,000
	실내체육관	소형(1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20,000
		중형(2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30,000
		대형(3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40,000

* 이외 체육시설은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상업사용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종 별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공설운동장	주간	15,000
		야간	20,000
	실내체육관, 성향스포츠클럽센터(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야간	25,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	공설운동장	소형(10미터미만 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10,000
		중형(2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20,000
		대(1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30,000
	실내체육관, 성향스포츠클럽센터(다목적체육관)	소형(1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20,000
		중형(2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30,000
		대형(30미터미만x1.3미터)1 (동일행사기간)	40,000

* 이외 체육시설은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6]

부대시설 사용료 (제22조 관련)

구분	기 준			요 금
전광판	공 설 운 동 장			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월기본요금×1/30×사용일)
	실 내 체 육 관			10,000+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	라이트시설		전 용 사 용	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월기본요금×1/30×사용일)
			일 시 사 용	2,500원(4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5,000원(8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8,000원(16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10,000원(16등초과) +실제사용관허요금		
		풋 살 구 장 (1 시 간 당)		10,000원
		축 구 전 용 1 구 장 축 구 전 용 2 구 장		10,000원(기본료, 40등/80lw) + 실제 사용요금
		테 니 스 장 1 면 당	10,000원	
		일 반 전 기		
음향설비	마 이 크 3 대 기 준			20,000원 +3대초과 1대당 5,000원 추가
냉방기	실 내 체 육 관	전용사용	냉 방 기	(월기본료×1/30) + 실제사용관허요금
			난 방 기	기본료(20,000원) + 실제 유류 사용요금

※ 풋살경기장, 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 전기요금은 광양실내체육관 전용사용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는 실내체육관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냉난방기를 제외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부대시설 사용료 (제22조 관련)

구분	기 준			요 금
전광판	공 설 운 동 장			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월기본요금×1/30×사용일)
	실 내 체 육 관 , 성 향 스포츠 센터 (다 목 적 체 육 관)			10,000+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	라이트시설	실 내 체육관, 성 향 스포츠 센터 (다목적 체육관)	전 용 사 용	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월기본요금×1/30×사용일)
			일 시 사 용	2,500원(4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5,000원(8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8,000원(16등이하) +실제사용관허요금
				10,000원(16등초과) +실제사용관허요금
				풋 살 구 장 (1 시 간 당)
		축 구 전 용 1 구 장 축 구 전 용 2 구 장	10,000원(기본료, 40등/80lw) + 실제 사용요금	
		테 니 스 장 1 면 당	10,000원	
일 반 전 기			5,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음향설비	마 이 크 3 대 기 준			20,000원 +3대초과 1대당 5,000원 추가
냉방기	실 내 체육관, 성 향 스포츠센터 (다 목 적 체육관)	전용사용	냉 방 기	(월기본료×1/30) + 실제사용관허요금
			난 방 기	기본료(20,000원) + 실제 유류 사용요금

※ 풋살경기장, 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 전기요금은 광양실내체육관 전용사용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는 실내체육관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냉난방기를 제외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7]

광양수영장 이용료 (제22조 관련)

1. 단일형

(단위: 원)

구 분	수 영			헬 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체: 3,000)	2,000 (단체: 1,500)	-			
1개월	60,000	50,000	30,000	35,000	35,000	40,000
3개월	153,000	127,500	76,500	105,000	105,000	120,000

2. 연계형

(단위: 원)

구 분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개월	80,000	72,000	55,000	60,000
3개월	213,000	191,000	146,000	180,000

(비고) 1. 광양수영장 이용료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단일형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다만, 수영 외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영 연계상품은 월회원 15%, 분기회원 25%를 감면한다. 다만, 다른 연계형 상품의 경우는 월 10,000원을 할인한다.

4. 가임여성은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만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5.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영의 월 강습료 10,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6.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7. 그린카드 소지자(개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7]

수영장 이용료 (제22조 관련)

1. 단일형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수 영			헬 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광양수영장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체: 3,000)	2,000 (단체: 1,500)	-			
	1개월	60,000	50,000	30,000	35,000	35,000	40,000
	3개월	153,000	127,500	76,500	105,000	105,000	120,000
성항스포츠센터수영장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체: 3,000)	2,000 (단체: 1,500)	-			
	1개월	60,000	50,000	30,000	-	-	40,000
	3개월	153,000	127,500	76,500	-	-	120,000

2. 연계형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광양수영장	대 상	일반(성인)	가임여성	감면대상	일 반
	1개월	80,000	72,000	55,000	60,000
	3개월	213,000	191,000	146,000	180,000

(비고) 1. 수영장 이용료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단일형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다만, 수영 외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영 연계상품은 광양수영장만 해당하며 월회원 15%, 분기회원 25%를 감면한다. 다만, 다른 연계형 상품의 경우는 월 10,000원을 할인한다.

4. 가임여성은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만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5.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영의 월 강습료 10,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6.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7. 그린카드 소지자(개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8]

입 장 료 (제3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1 인 당			단 체
	일반인	청소년, 군인	어 린 이	
공설운동장	200	100	100	1인당 기준액의 50% 징수
실내체육관	300	200	100	"

※ 경로우대자는 무료로 한다.

[별표 8]

입 장 료 (제3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1 인 당			단 체
	일반인	청소년, 군인	어 린 이	
공설운동장	200	100	100	1인당 기준액의 50% 징수
실내체육관, 성환스포츠클러스터 (다목적체육관)	300	200	100	"

※ 경로우대자는 무료로 한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7호

붙임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수료”란 회원증 재발급과”를 ““수수료”란”으로 한다.

별표 1의 광양용강도서관란 다음에 광양금호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 초원길 42	
---------	------------	--

별표 2 제1호 이용시간란 중 나목의 용강도서관란 다음에 금호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호도서관
09:00~18:00
09:00~17:00

별표 2 제2호 휴관일란 중 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양금호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중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제13조관련)

□ 부대시설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 청 인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료	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원	
	. . .부터 . . .까지		원	

년 월 일

광양시장

도서관운영과장

확
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수료”란 회원증 재발급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수료”란 ----- ----- ----- -----.																																																																																																																																																				
[별표 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광양중앙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td><td></td></tr><tr><td>광양중마도서관</td><td>광양시 광장로 14(중동)</td><td></td></tr><tr><td>광양희망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td><td></td></tr><tr><td>광양용강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td><td></td></tr><tr><td><신설></td><td><신설></td><td></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광양중앙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광양용강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신설>	<신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광양중앙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td><td></td></tr><tr><td>광양중마도서관</td><td>광양시 광장로 14(중동)</td><td></td></tr><tr><td>광양희망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td><td></td></tr><tr><td>광양용강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td><td></td></tr><tr><td>광양금호도서관</td><td>광양시 초원길 42</td><td></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광양중앙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광양용강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 초원길 42																																																																																																																	
명칭	소재지	비고																																																																																																																																																			
광양중앙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광양용강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신설>	<신설>																																																																																																																																																				
명칭	소재지	비고																																																																																																																																																			
광양중앙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광양용강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 초원길 42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5조 관련) <table><tr><td rowspan="4">1. 이용시간</td><td colspan="6">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td></tr><tr><td colspan="6">나. 자료실</td></tr><tr><td>구분</td><td>중앙도서관</td><td>중마도서관</td><td>희망도서관</td><td>용강도서관</td><td><신설></td></tr><tr><td>평일</td><td>09:00 ~18:00</td><td>09:00 ~18:00</td><td>10:00 ~19:00</td><td>09:00 ~18:00</td><td><신설></td></tr><tr><td>주말</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신설></td></tr><tr><td rowspan="4">2. 휴관일</td><td colspan="6">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td></tr><tr><td colspan="6">나. 정기정소일</td></tr><tr><td colspan="6">(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신설></td></tr></table>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						나. 자료실						구분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신설>	평일	09:00 ~18:00	09:00 ~18:00	10:00 ~19:00	09:00 ~18:00	<신설>	주말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신설>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정기정소일						(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신설>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5조 관련) <table><tr><td rowspan="4">1. 이용시간</td><td colspan="6">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td></tr><tr><td colspan="6">나. 자료실</td></tr><tr><td>구분</td><td>중앙도서관</td><td>중마도서관</td><td>희망도서관</td><td>용강도서관</td><td>금호도서관</td></tr><tr><td>평일</td><td>09:00 ~18:00</td><td>09:00 ~18:00</td><td>10:00 ~19:00</td><td>09:00 ~18:00</td><td>09:00 ~18:00</td></tr><tr><td>주말</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09:00 ~17:00</td><td>09:00 ~17:00</td></tr><tr><td rowspan="4">2. 휴관일</td><td colspan="6">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td></tr><tr><td colspan="6">나. 정기정소일</td></tr><tr><td colspan="6">(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td></tr><tr><td colspan="6">(5) 광양금호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td></tr></table>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						나. 자료실						구분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금호도서관	평일	09:00 ~18:00	09:00 ~18:00	10:00 ~19:00	09:00 ~18:00	09:00 ~18:00	주말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정기정소일						(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5) 광양금호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																																																																																																																																																			
		나. 자료실																																																																																																																																																			
		구분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신설>																																																																																																																																														
	평일	09:00 ~18:00	09:00 ~18:00	10:00 ~19:00	09:00 ~18:00	<신설>																																																																																																																																															
주말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신설>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정기정소일																																																																																																																																																				
	(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신설>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																																																																																																																																																				
	나. 자료실																																																																																																																																																				
	구분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금호도서관																																																																																																																																															
	평일	09:00 ~18:00	09:00 ~18:00	10:00 ~19:00	09:00 ~18:00	09:00 ~18:00																																																																																																																																															
주말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09:00 ~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정기정소일																																																																																																																																																				
	(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5) 광양금호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제13조 관련)

□ 부대시설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성별	남/여	연락처(☎)	
	대표자명					
	주 소					
공연교육행사의 명칭						
공연교육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시간 회)				참가인원 명
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사항	○변경건명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부속설비	컴퓨터() , 유선랜() , 무선랜() , 프린터() , 램프() , 냉난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양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1)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확인서류, 2)부대시설 신청 이용자 통계자료 작성 및 이력관리, 3)민원처리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증빙서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

□ 부대시설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 시립중앙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신청인	사 용 기 간	사용시설명	사용료	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원	
	. . 부터 . . 까지		원	
년 월 일 광양시장 도서관사업소장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제13조 관련)

□ 부대시설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성별	남/여	연락처(☎)	
	대표자명					
	주 소					
공연교육행사의 명칭						
공연교육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시간 회)				참가인원 명
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사항	○변경건명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부속설비	컴퓨터() , 유선랜() , 무선랜() , 프린터() , 램프() , 냉난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양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1)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확인서류, 2)부대시설 신청 이용자 통계자료 작성 및 이력관리, 3)민원처리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증빙서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

□ 부대시설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청인	사 용 기 간	사용시설명	사용료	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원	
	. . 부터 . . 까지		원	
년 월 일 광양시장 도서관운영과장 확인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도시계획철성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8호

붙 임 :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도시계획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19호

붙 임 :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4.)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사무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920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전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적”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 ----- ----- ----- ----- -----.
제4조(전문위원) ①·② (생략)	제4조(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 제2항에 따른 ----- ----- 일반적인 ----- ----- -----.
<신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u>제5조</u> · <u>제6조</u> (생략)	<u>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u> <u>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u>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u> <u>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u>5.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u> <u>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 <u>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u> <u>제6조</u> · <u>제7조</u>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	---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4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을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5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
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 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6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 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을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위탁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7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위탁시행
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위탁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위탁시행규칙을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8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
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 및교부사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
처리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99호

붙임 :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
분지매각규칙 폐지규칙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 매각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매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업무용지공급에
관한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정 제422호

붙임 :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업무용지공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업무용지공급에 관한규정 폐지규정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업무용지공급에 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이주민택지공급
에관한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정 제423호

붙임 :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이주민택지공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이주민택지공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

광양시중마동지구택지조성사업이주민택지공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